

중국, 사이버보안법 시행 관련 데이터 국외이전 가이드라인 2차 초안 발표

KEY CONTENTS

- 2017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시행규칙과 관련된 데이터 국외이전 가이드라인의 제2차 초안이 발표됨
- 중국의 4개 인터넷 업체 등 12개 단체들이 참여해 작성된 이 초안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한 정의 등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

사이버보안법 시행규칙의 일환...‘국내업무’에 대한 개념 정의 등 새롭게 제시

- ▶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(SAC)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(AQSIQ)은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시행규칙 중 하나인 ‘데이터 국외이전 가이드라인 2차 초안(second draft of cross-border data transfer guidelines)’을 발표
- 이번 2차 초안에서는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와 관련, “국내 업무(Domestic Operations)”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
- 이에 따르면, 중국 영토에 등록하지 않은 네트워크 사업자라도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영토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‘국내 업무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
- 또한 ‘데이터의 국외이전’에 대해서는 “중국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관련 정보를 외국 기업 또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방식 혹은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제공하는 일회성 또는 지속적인 활동”으로 정의
- 이 초안은 이 밖에 △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(personal information)와 △평가(assessment) 절차 및 기준 등을 제시했으며, 특정 상황에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관할 당국에 자율 평가 보고서(Self-Assessment Reports)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

중국 관련 비즈니스 종사하는 외국 기업에 직접적 영향...구체적인 시행 계획 아직 오리무중

- ▶ 중국 사이버 보안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, 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 중 하나인 데이터 현지화 및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내용은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
- 이처럼 시행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규칙 및 표준의 제정 문제 때문이며, 일단 그 간극은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Draft Transmission Measures를 통해 메워질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음
- Draft Transmission Measures의 초안이 2017년 4월 11일 공개된 이래로 산업계 대표들과 입법 담당자들 사이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 5월 말 두 번째 초안에 대한 비공개 회람이 진행
- Draft Transmission Measures의 최종 버전이 곧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,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버전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최종 버전에 대한 명확한 공개 일정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
- 그 대신에, 데이터 국외이전 가이드라인 2차 초안이 2017년 8월 말 발표되었으며 이는 중국 정부 당국이 이 문제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표준화위원회에 위임하기 위해 좀 더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
-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의해 작성된 운영 세부사항이 언제 확정되고 효력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
- ▶ 한편, 이번 2차 초안 작업에는 Tencent, Alibaba, Ali Cloud, Ant Financial 등 4개 민간업체가 포함된 12개의 단체가 참여

참고문헌 China Issues Second Draft of Cross-Border Data Transfer Guidelines, Faegre Banker Daniels, 2017.10.5